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947 제안연월일: 2024. 6. .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2024.5.31.	의(2024.6.14.) 상정후 제안설명, 검
(제2200057호)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2024.6.3.	의(2024.6.14.) 상정후 제안설명, 검
(제2200103호)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2024.6.7.	의(2024.6.14.) 상정후 제안설명, 검
(제2200227호)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2024.6.10.	의(2024.6.14.) 상정후 제안설명, 검
(제2200261호)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2024.6.13.	의(2024.6.14.) 상정후 제안설명, 검
(제2200465호)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 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 나.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등).
-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 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명한다.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

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 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 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 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천 2명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신 설>

<신 설>

⑤ • ⑥ (생 략)

(생 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다만,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 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 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 설>

⑤ • ⑥ (생략)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제10조(이사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 결하다.

1. ~ 10. (생략) <u><신 설></u>

11. (생략) <신 설>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 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 설>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의4(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 등)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경우